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8. 10. 15. 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 숙 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18년 10월 2일
- 회부일자: 2018년 10월 4일

3. 제정이유

그동안 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 운동에만 치중된 획일적이고 비자율적인 훈련과 학교운동부 내 폭력 등으로 인하여,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와 비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.

이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(안 제5조)
- 학생선수의 인권보호(안 제6조)
-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 및 연수(안 제7조)
- 도핑방지 교육(안 제8조)
- 학교운동부 운영 실태조사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지금까지 학교운동부는 엘리트선수 육성과 진로·진학을 위한 경기참가 및 경기실적 결과를 중시하여 획일적이고 비 자율적인 훈련 위주로 운영되었으며, 이로 인하여 최저학력기준 미달, 학교운동부 내 폭력 및 구타와 같은 인권침해, 대회출전 제한과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목표 상실로 인한 운동 중도 포기, 학교부적응 등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.

- 이러한 측면에서,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 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들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학생선수의 도핑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, 안 제9조에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.

- 본 조례안은 전체적인 조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고,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주요사항들을 명문화함으로써, 학업성취와 운동기량을 함께 겸비한 학생운동선수를 육성하는 학교운동부 운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.